

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3의2] <신설 2024. 1. 5.>

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(제6조의2제8항 관련)

1.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

공무원의 종류	적용대상
일반직공무원	6급 이하
별정직공무원	6급상당 이하
연구직·지도직공무원	연구사·지도사
지방전문경력관	나군 및 다군

2.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11에 따른 공무원(정무직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